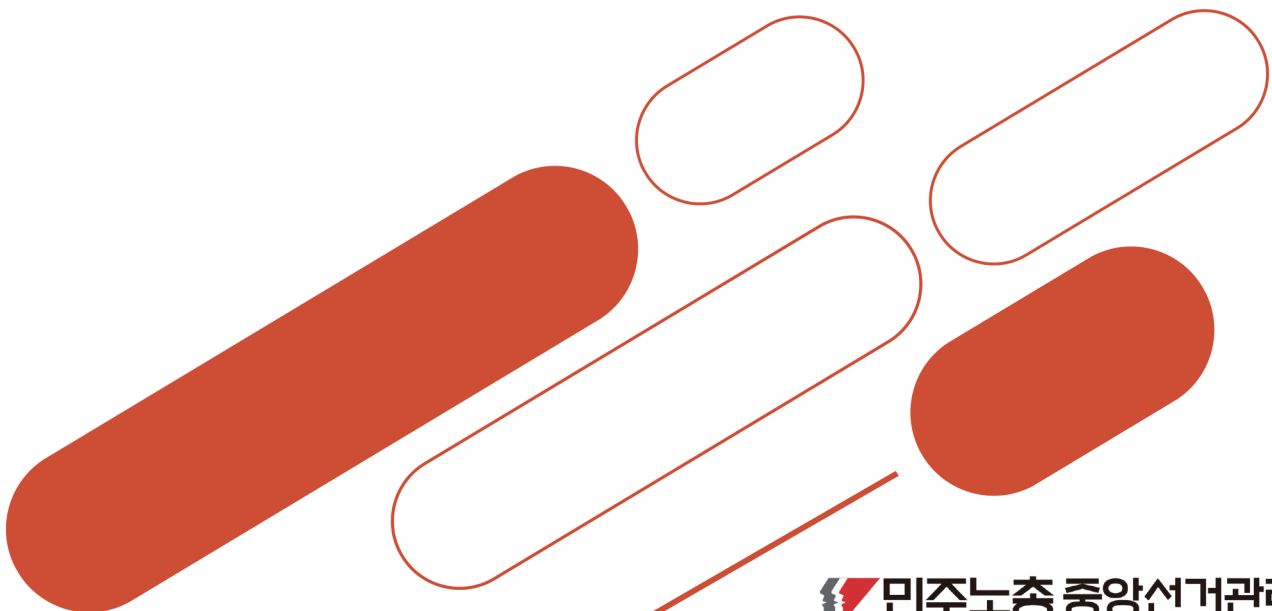


민주노총 11기 부위원장 선거

선거운동 안내서







선거운동안내서

선거운동기간 : 12월 15일(금) 24:00 ~ 12월 27일(수) 24:00

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

민주노총 11기 부위원장 선거 선거운동안내서 목차

부위원장 선거 후보자 개인홍보물	05
각급조직 노조간부 금지 및 의무사항	06
위반한 선거운동 신고와 조치	07
사례로 보는 선거운동	09

부위원장 선거

후보자 개인홍보물

개인홍보물의 종류 인쇄물

- A3 이하 규격 인쇄물 - 2종 제한
 - 명함판 규격 인쇄물 - 3종 제한
 - 120mm x 60mm 이하
 - 전지 규격 인쇄물 - 2종 제한
- 4 × 6전지(788mm × 1091mm), B전지(765mm × 1085mm), 국전지 (636mm × 939mm), A전지(625mm × 880mm) 등 전지 규격
- 홍보용 차량 및 차량 부착 인쇄물 - 승합차종 3대
- ※ 인쇄물의 색도 및 수량 제한은 없음

개인홍보물의 종류 온라인

- 홈페이지 게시판, SNS, 기타 정보통신매체 선전물
 - 동영상 홍보물
 - 선거용 홈페이지, SNS 계정
- ※ 온라인 선전물 및 계정의 수량 등 제한 없음

개인홍보물의 종류 유의사항

- 위 개인홍보물 이외의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홍보물은 사용할 수 없음
- 개인홍보물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음
- 개인홍보물의 종류, 수량, 양식, 규격 등은 중앙선관위와 모든 후보자의 합의로 변경될 수 있음

각급조직 노조간부 금지 및 의무사항

| 각급 단위조직과 그 산하조직(기구)의 의무 |

●아래와 같이 모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원활히 지원해야 함

- 후보자 누구라도 사업장 방문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 선거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업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후보자에게 사전에 제공함
- 후보자 누구라도 개인홍보물 우편배송을 할 경우 우편으로 수령한 개인홍보물을 특정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함
- 후보자 누구라도 각 단위조직 및 그 산하조직(기구) 온라인 계정,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사전승인을 득한 개인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이를 삭제하지 아니함
- 후보자 누구라도 각 단위조직 및 그 산하조직(기구) 사전보고 하에 각급 회의 및 회의 시 해당 연설을 하려 할 경우 이에 협조함

●각급 단위조직 및 그 산하기구 '명의' 의 아래 행위는 금지됨

- 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조직(기구) 명의로 개설된 소셜미디어(SNS)계정 ·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· 노조 기관지 및 선전물 게재 등의 방법, 대중연설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· 반대하거나 지지 ·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됨
- 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조직(기구)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됨
- 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조직(기구)의 '간부' 가 공식 직함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,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됨

| 노조 임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|

●대상자

- 민주노총 중앙 및 지역본부 임원 · 각종 위원회의 대표(의장) 및 사무총국(처) 성원
- 산별노조(연맹) 중앙 임원 · 각종 위원회의 대표(의장) 및 중앙사무처 성원

●금지 행위

-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후보에게 전달하거나 대중에게 공표하는 행위
- 업무로 얻은 기회 또는 권한 등을 이용해 후보자를 지지 · 반대하거나 지지 ·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
- 선거운동원이 되는 행위
-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물과 개인홍보물, 각종 홈페이지나 기관지 및 모바일 메시지 등을 통해 본인 이름으로 지지 또는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

부위원장 선거

위반한 선거운동 신고와 조치

| 선거운동 금지사항과 제재 |

● 금지사항

- 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- ② 정부나 사용자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
→ 후보자격 박탈, 당선무효
- ③ 폭력, 협박, 납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
→ 선거인에게 모바일메시지로 공표, 규율위 제소
- ④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,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
→ 후보자격 박탈, 당선무효
- ⑤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, 중상모략, 명예훼손 행위
- ⑥ 본 안내서에 담긴 금지 및 의무사항 위반 행위
-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

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

- ① 개인홍보물 배포·게시 등의 중단 명령
- ② 특정 후보자와 위반 행위자에 각각에 대한, 또는 동시 경고처분 및 그 사실의 공표
- ③ 특정 후보자의 자격 박탈 또는 (사후) 당선 무효
 - 공표방법 : 각급 선관위 및 단위조직 홈페이지, 사업장게시판 등 게시 해당 후보자 선거홈페이지 첫 화면 게시 등
 - 위 공표 시간이 부족할 경우와 금지사항 ②, ③, ④ 위반의 경우,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로 선거인(전체 또는 특정지역 또는 해당투표구)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이를 알림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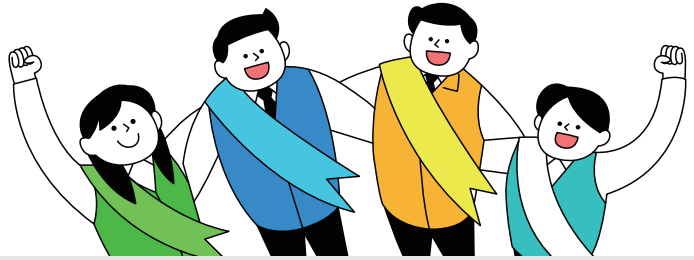
| 위반한 선거운동 신고와 조치 |

● 신고

위반한 선거운동 신고는 후보자와 조합원 누구라도 할 수 있음
 단위조직 선관위, 산별노조(연맹) 선관위, 지역본부 선관위 등에 신고
 ※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직접 신고도 가능

● 각급 선관위의 조치

신고 접수 즉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로 사건 보고하고, 중앙선관위 지시에 따라 사건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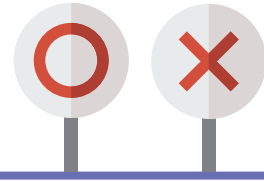


●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의 조치

- ① 직접 또는 사건을 보고한 각급 선관위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케 하여, 신고 또는 보고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재 종류 중 하나의 제재 여부 등 결정. 단, 제재 결정 기한은 중앙선관위 의결로 연장될 수 있음. 중앙선관위 의결은 9명 이상 참석의 과반 의결로 정해짐.
- ※ 위 공표 시간이 부족할 경우와 금지사항 ②, ③, ④ 위반의 경우,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로 선거인(전체 또는 특정지역 또는 해당투표구)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이를 알림.
- ②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위 제재 결정 및 공표와는 별도로 해당 사안을 민주노총 규약규정 상의 징계사유로 상정하여 선거 종료 뒤 첫 번째 개최되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며, 이 중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규율위원회에 제소함. 단, 금지사항 ②, ③, ④ 위반의 경우 제재 결정 즉시 규율위원회에 제소함.

2023 직선

사례로 보는 선거운동



| 후보자 |



“괜찮아요”

- 어깨띠, 모자와 옷 기타 소품을 착용 · 소지 · 사용하여 후보자 홍보
- 직접 후보자의 이름으로 노조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이나 온라인 선전물 게재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인쇄물을 배포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인쇄물을 각급 단위노조가 지정한 장소에 게시 · 비치
- 각급 단위조직이 지정 통보한 회의 · 회합 · 행사에서 연설
- 주변 조합원들의 이메일 및 SNS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개인홍보물 전송



“절대 안돼요”

-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는 발언
- 금품 및 향응 제공 또는 투표 또는 당선을 조건으로 노조 내 보직 제공 등 경제적 이익 약속하는 발언
- 각 단위조직이 지정한 장소 이외에 후보자의 홍보물 기타 표시물을 상당 시간 이상 게시 · 비치
- 중앙 및 지역본부 선관위에 사전통보(후보조 별 승합차종 3대 제한)한 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표시물로 사용하는 행위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모든 표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
- 각급 조직 노조간부로부터 조합원 연락처를 제공받아 모바일 메시지를 대량전송하는 행위

| 일반 조합원(현장조직 포함) |



“괜찮아요”

- 본인 또는 현장조직의 이름을 밝혀 노동조합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에 특정 후보의 정견 · 정책에 대한 지지 · 반대의 의견 표명
- 본인 또는 현장조직의 소셜네트워크 프로필에 특



“절대 안돼요”

- 특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, 해당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사생활(혼인여부, 성적 지향, 종교, 채무 관계 등)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

정 후보를 상징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함을 알 수 있는 이미지나 음향, 영상 등을 띄우는 행위

- 본인 또는 현장조직의 이름을 밝혀 주변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·반대 및 권유하는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및 SNS를 송신하는 행위
-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는 행위

• 특정 후보자에 대해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

- 특정 후보자의 정견·정책을 소개하거나 지지·반대의 의사를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하는 행위
- 사업장 내외에 적법하게 비치·게시된 후보자의 선거공보물, 개인홍보물 기타 표시물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폐기하는 행위

| 산별노조(연맹) · 지역본부 · 단위조직 |



“관찰아요”

- 각 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해당 조직 명의로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게시하는 행위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모든 후보자의 개인홍보물을 노조기관지에 소개하는 행위
- 후보자 누구에게라도, 사업장 방문 선거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
- 후보자 누구의 개인홍보물이라도 우편으로 수령한 홍보물을 특정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는 행위
- 후보자 누구에게라도, 각 조직의 온라인 계정,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 사전승인을 득한 개인홍보물을 게시하도록 개방하는 행위
- 후보자 누구에게라도, 사전 보고 하에 각급 회의 및 회의 시 연설을 허하는 행위
- 중앙선거위원회에 요청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통의 질의를 하고, 중앙선거관위로부터 승인받은 답변서를 조합원들에게 소개하는 행위



“절대 안돼요”

- 조직 명칭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·반대의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
-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조직 명의로 특정 후보의 정견·정책에 대한 소개 및 평가를 제시하는 행위
- 노조가 관리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공간에 각 후보자들의 개인홍보물의 비치를 허용하는 행위
- 조직 홈페이지에 모든 후보자들의 개인홍보물을 게재하면서 임의로 내용을 수정·삭제·변경하여 기재하는 행위
- 선거운동기간이 지났음에도 각급 단위조직이 지정한 장소에 일부 후보자의 홍보물 기타 표시물만 계속 게시·비치하는 행위

| 민주노총 소속 모든 조직의 임원과 노조 간부 |
(민주노총, 민주노총지역본부, 산별노조(연맹) 중앙 제외)



“관참아요”

- 직함 사용 없이 언론기고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·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
- 직함 사용 없이 대중연설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·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
- 비공식적인 조합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정견·정책에 대한 평가나 입장을 언급하는 행위



“절대 안돼요”

- 자신의 직함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민주노총 공식적인 회의·행사 등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·반대의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
- 자신의 직함을 언급하여 주변 조합원들에게 모바일 메시지를 보내 특정 후보의 지지·반대 및 이를 권유하는 행위

| 민주노총 · 민주노총지역본부 · 산별노조(연맹)중앙 임원 · 사무처 |



“관참은 건 없어요”

투표가 곧 투쟁입니다!
세상을 바꾸는 120만의 선택

